

의안 번호	제3580호
----------	--------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02월 28일 이희성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03월 11일
- 다. 상정일자 : 2025년 03월 18일
- 라. 의결일자 : 2025년 03월 18일

2. 개정이유

-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둬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체육시설 및 단체의 근거 신설(안 제2조8호, 9호)
- 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의제공 근거 신설(안 제10조의1, 제10조의2)
- 다. 그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개정안 제2조제9호의 ‘장애인 체육단체’ 정의를 개정할 경우,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이 불충분한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에 안 제2조제9호를 현행 조례 제2조제8호의 ‘장애인단체’ 정의로 수정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김포시’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개정안 제3조에는 ‘김포시’에 대한 약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수정안 1부**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김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9.“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김포시장래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체육진흥”을 “김포시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시설
2.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단체”를 “장애인 체육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p> <p>1. ~ 7. (생략)</p> <p>8.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p> <p><신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김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p> <p>9.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김포시장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p>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김포시 체육진흥-----

-----.

제10조의2(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시설
2.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생략)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4. ~ 8. (생략)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체육단체-----

4. ~ 8. (현행과 같음)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580호
----------	--------

제출년월일 2025. 3. 12.
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2조제9호의 ‘장애인 체육단체’ 정의를 개정할 경우,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이 불충분한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받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에 안 제2조제9호를 현행 조례 제2조제8호의 ‘장애인단체’ 정의로 수정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김포시’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개정안 제3조에는 ‘김포시’에 대한 약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단체’에 관한 정의 수정(안 제2조제9호)
- ‘김포시’ 약칭 반영(안 제3조)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장애인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김포시 체육진흥”을 “시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체육단체”를 “장애인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p> <p>1. ~ 8. (생략)</p> <p>9. <u>“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김포시장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제11조(경비의 지원) ① (생략)</p> <p>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u>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u></p> <p>4. ~ 8. (생략)</p>	<p>제2조(정의)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장애인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 ----- <u>시 체육진흥</u> ----- -----.</p> <p>제11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장애인단체</u>----- -----</p> <p>4. ~ 8. (현행과 같음)</p>